



# 보도자료

국민의 신뢰를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온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12월 26일(수) 배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

2018년 12월 27일(목) 오전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김현수 (051-460-1040)

방송·인터넷 매체는 12월 26일(수) 낮 12시

담당: 박성욱 조사관(051-460-1043)

노  
제  
6  
호  
중  
의

## ‘하도급 대금 갑질’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여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

### 하도급법 위반 내용

□ (서면 미발급)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 조건을 기재한 계약 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모두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대우조선해양과 거래하면서 해양플랜트나 선박의 배관, 전기 장치, 선체 가공 등의 작업을 주로 수행한 2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관련된 것이다.

\*\* 서면 미발급 행위 건수는 2018년 1월 11일 공정위 의결 제2018-028호로 이미 처리된 위반 행위를 포함한 것이다.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 공사는 ‘선 작업·후 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 하도급 업체는 작업 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이다.

\*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 사전 계약 서면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전제 조건임을 감안할 때, 대우조선해양이 의도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 (부당한 하도급 대금)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 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 기성 시수: 작업 물량을 시간으로 변환한 것

○ (근거 없는 시수 계약) 대우조선해양은 시수 계약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정·추가 공사는 객관적인 시수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공종별 표준원단위(폼셈표)\*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

- \* 시수 계약을 위해서는 작업 종류별로 물량을 시수로 전환하는 기본 산식인 표준원단위(품셈표)가 꼭 필요하다. 표준원단위가 없으면 기성 시수가 실제 작업 물량과 괴리되어 임의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수(時數, MAN-HOUR) : 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으로, 수량에 일정한 산식(품셈, 원단위\*)을 곱하여 정해짐.

\* 원단위(품셈): 한단위 수량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준 시간

■ 시수계약 : 하도급대금 = “시수(時數)” (변수) × “임률단가” (상수)

예) 임률단가를 10,000원으로 가정하면, 어떤 작업 물량이 ‘10시수’ 일 때 하도급 대금은 100,000원이 된다.

- 대우조선해양은 객관적 근거없이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기성을 지급했던 것이다.
- 한편 하도급 업체로서는 수정·추가 작업의 대가로 받는 기성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 대우조선해양은 이것의 심각성을 잘 알면서도 실제 작업량과 무관하게 기성이 정해진다는 사실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알려지면 소송 등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
-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한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은 합의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공사 대금을 매월 일괄 정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하도급 업체로서는 계약서 없이 기성 시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 이와 같이 '사전 조율이나 합의 절차 없이' 수정·추가 작업 기성이 집행된 사실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내부 문서에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

\* 하도급 업체들은 대부분 대우조선해양에 100% 의존하면서 매월 기성을 받아야만 직원 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히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지급한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 업체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 또는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 (예산 부족)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스스로 진단했다.

- 이번 조사 대상 기간(2013년~2016년) 동안 국내 조선 업계 전체가 침체되었고 특히 해양플랜트 수주가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생산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했다.

- 한편 **해양플랜트**의 경우, 일반 상선(商船)과 달리 표준화하기가 어렵고 건조 경험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수정·추가 공사가 더욱 빈번하게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 결과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은 수정·추가 작업을 위해 **투입한 노동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이것은 대우조선해양이 미리 합의된 기준도 없이, 작업을 시킨 후 자신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이번 조사와 관련된 하도급 업체 대부분이 해양플랜트 제조와 관련이 있다.

○ (현저히 낮은 기성 인정 비율) 하도급 업체들이 수정·추가 공사를 위해 실제로 투입한 작업 시간 중에서 기성 시수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적으로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 본 공사의 경우 보통 작업 시간의 70% 이상 기성 시수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도 현저하게 낮았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

□ (**부당 특약**)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총 계약 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 이것은 본 공사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을 하도급 업체에게 무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당하다.

○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 업체가 법인인 경우, 계약 이행 보증 및 하자 보수 보증 명목으로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하도급 업체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 이것은 하도급 업체가 이미 통상의 거래 관행에 따른 보증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3조의4**에 위반된다.

## 2

## 조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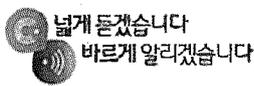
-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공표명령)하고, 과징금 108억 원 부과와 함께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3

## 의의 · 계획

- 이번 조치는 조선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들의 열악한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나중에 원사업자가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조선 업종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수 계약 방식과 불투명한 계약 관행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부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대규모 현장 조사와 포렌식 조사에 의한 자료 복원을 통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 공정위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다른 조선 업체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여, 조선 업종의 부당 대금 결정 등 악질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붙임 > 1. 대우조선해양(주)의 일반 현황  
2. 관련 하도급법 규정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http://www.ftc.go.kr)



## 《붙임》

### 1. 대우조선해양(주)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 명,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재 무 현 황						상시고용 종업원수
	자산 총계	연 간 매출액	자본금	영 업 이 익	당 기 순이익	영 업 이익률	
2013년	147,359	133,596	9,620	△10,267	△9,204	△7.7	12,480
2014년	155,340	139,485	9,620	△5,767	△9,318	△4.1	12,717
2015년	170,750	138,029	13,721	△22,638	△23,079	△16.4	12,326
2016년	134,837	113,854	3,329	△14,135	△29,910	△12.4	10,684
2017년	110,227	106,340	5,383	7,165	7,391	6.7	10,226

###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3. (생략)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4. (생략)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 8. (생략)